의안번호	제 195 호
의 결	2011년 7월 일
연 월 일	(제 302 회)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1년 6월 3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95 제출연월일 : 2011년 6월 30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#### 1. 제안사유

○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「함께하는 충북」 실현을 위하여 **남부출장소를 설치**코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□ 남부출장소 설치
- 시행시기 : 2012. 1. 1.
- 관할구역 : 보은군, 옥천군, 영동군
- 담당사무
  -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  -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**3. 의안전문**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**5. 관계법령 발췌** : 붙임

**6. 비용추계서** : 해당없음

#### 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5장 제57조 앞에 "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"를 삽입하며,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 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(이하"북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-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.
  -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

제58조 중 "출장소"를 "북부출장소"로 한다.

제59조 본문 중 "출장소장"을 "북부출장소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출장소"를 "북부출장소"로 한다.

제59조 다음에 제2절(제60조부터 제62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

- 제6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(이하"남부출장소"라 한 다)를 설치한다.
  -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.
  -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,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.
- 제61조(소장)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-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
-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	, 5
제5장 출장소	제5장 출장소
	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
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북부지역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출장소의 소재지는 관할구역 내에 둔다. ③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	제57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(이하"북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.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.
제58조(소장)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58조(소장) <u>북부출장소</u> 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 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제59조(소관사무) <u>출장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<u>출장소</u>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~ 3. (생략)	제59조(소관사무) <u>북부출장소장</u> 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<u>북부출장소</u>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
	제6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(이하"남부출장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.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,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.
	제61조(소장)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,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	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전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
## 관계법령 발췌

#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
  - ③~⑥ (생략)
- 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